



시행세칙

산업체위탁교육 운영 시행세칙

문서번호	TWI-A603-1		
제정일자	2012. 02. 29.		
개정일자	2019. 06. 03.		
개정번호	3	페이지	1/6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모집 및 편성
- 부칙
- 별첨

작성부서	산학입학처	제정일자	2012. 02. 29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담 당	사무처장	산학입학처장	기획예산처장			교무학생처장	총 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	시행세칙	문서번호	TWI-A603-1		
		제정일자	2012. 02. 29.		
	산업체위탁교육 운영 시행세칙	개정일자	2019. 06. 03.		
		개정번호	3	페이지	3/6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산학협동 운영 규정 제4장 제 15조에 따라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01.26.>

제2조(정의) 산업체위탁교육생(이하 “위탁교육생” 이라 한다)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정원의외로 모집하는 직장인대학생을 의미한다.

제2장 모집 및 편성

제3조(모집전공) 모집전공은 이 대학교에 설치된 전공에 한하여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모집인원)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모집한다.

제5조(모집시기) 위탁교육생의 모집은 교육부의 해당 연도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한다. <개정 2017.01.26.>

제6조(산업체의 범위) 산업체 인정기준에 따른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2.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<개정 2017.01.26.>
3.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<개정 2017.01.26.>
4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<개정 2017.01.26.>
5.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<개정 2017.01.26.>
6.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(사업주를 포함한다)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<개정 2017.01.26.>
7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8.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9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<개정 2017.01.26.>

제7조(지원 및 전형절차) 위탁교육생 지원 및 전형절차는 교육부의 해당 연도 전문대학 산업

	시행세칙		문서번호	TWI-A603-1	
			제정일자	2012. 02. 29.	
	산업체위탁교육 운영 시행세칙		개정일자	2019. 06. 03.	
			개정번호	3	페이지

체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이 대학교에서 매 학년도 정한 전형 절차에 의한다. <개정 2017.01.26.>

제8조(지원전공) 지원전공은 재직 중인 산업체의 근무직종(분야)과 관련 있는 전공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9조(별도학급설치지역) ① 위탁교육장은 대학교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위탁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외부위탁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법령 및 교육부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른다. <개정 2017.01.26.>

③ 외부위탁교육장에 출강하는 전임교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7.01.26.>

제10조(별도학급편성) ① 별도학급의 편성운영은 모집단위별 40명 단위로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대학교의 해당 연도 모집계획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1.26.>

② 별도학급 편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집단위별(주·야간 구분) 입학정원의 10% 범위 안에서 혼합 편성한다. <개정 2017.01.26.>

제11조(위탁교육 계약체결) ① 산업체위탁교육은 위탁산업체 장과 대학교 총장과의 계약체결에 의해 시행한다.

② 산업체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 또는 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그 단체 또는 조합의 장과 대학교 총장이 계약 체결한다.

제12조(위탁교육생 선발 기준 및 자격) ① 위탁교육생은 당해 산업체와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하여 선발한다.

② 위탁교육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

제12조의1(위탁교육생 선발에 따른 산학협력수당 지급) 산업체위탁교육생 모집에 성과를 낸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직원 보수 규정 제30조에 의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	시행세칙	문서번호	TWI-A603-1		
		제정일자	2012. 02. 29.		
	산업체위탁교육 운영 시행세칙	개정일자	2019. 06. 03.		
		개정번호	3	페이지	5/6

[본조신설 2019.06.03.]

제13조(경비부담 및 납부방법) ① 위탁교육을 위한 경비는 해당 전공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, 위탁산업체의 시설지원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.

② 경비의 납부는 위탁산업체 또는 위탁교육생이 이 대학교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4조(재직조회) ① 위탁교육생의 산업체 재직여부 확인은 연 2회(3월, 9월) 실시한다. <개정 2017.01.26.>

② 위탁교육생이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로 간주하여 제적처리 한다. 다만,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.

제15조(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체 임직원 및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(임명)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. <개정 2017.01.26.>

③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2회 정기회의를 실시한다. <개정 2017.01.26.>

④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위탁의뢰 산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
2. 위탁생의 선발기준
3. 위탁생의 신분 변동 심의
4.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5.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위탁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1.26.>
7. 대학교와 위탁산업체와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1.26.>
8. 그 밖에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<개정 2017.01.26.>

제16조(기타 학사운영 사항)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교육부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과 학칙 및 학사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7.01.26.>

	시행세칙	문서번호	TWI-A603-1	
		제정일자	2012. 02. 29.	
	산업체위탁교육 운영 시행세칙	개정일자	2019. 06. 03.	
		개정번호	3	페이지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다른 규정의 폐지) 산업체위탁교육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12조의1(위탁교육생 선발에 따른 산학협력수당 지급)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	시행세칙	문서번호	TWI-A605-01	
		제정일자	2012. 09. 17	
	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0	페이지

목 차

- 제1조 목적
- 제2조 용어의 정의
- 제3조 산업교원 구성
- 제4조 산업자문 방법
- 제5조 산업자문료 납부
- 제6조 분배 및 지급
- 제7조 실적평가반영
- 제8조 기타사항
- 부칙

	시행세칙		문서번호	TWI-A605-01	
			제정일자	2012. 09. 17	
	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		개정일자		
			개정번호	0	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 제2조(사업 및 활동) 6호인 산업체애로기술 지원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산업자문"이라 함은 동원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"산업체등"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산업교원"이라 함은 동원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3. "산업자문료"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동원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산업교원 구성)

-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, 경영 분야,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4조(산업자문 방법 등)

-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산업자문료 납부)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1일 최소 4시간 이상 기준으로 15만원(부가세 별도)에서 최대 25만원(부가세 별도)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1일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 시에 결정한다.
-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

	시행세칙		문서번호	TWI-A605-01	
			제정일자	2012. 09. 17	
	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		개정일자		
			개정번호	0	페이지

제6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5%를, 산학협력단에 5%를 배분한다.

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자문 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한다.

제7조(실적평가반영)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산업자문 신청서					
지원분야 (해당분야선택)	이.공학기술자문 / 경영지원 / 디자인 / 컨설팅				
신청기관(업체)	기관명		대표자		
	담당자	연락처:		E-mail:	
	주소				
희망자문기간	2012 . . . ~ 2012 . . . (총 시간)	산업자문료	(원)		
산업자문 주제					
산업교원 (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)	성명	소속/부서	연락처	참여율(100%)	비고
현재의 문제점					
산업자문 희망사항					
성공시 기대효과					
기타제안					

